

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[정순기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456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3. 11. 15.

발 의 자 : 정순기 의원

찬 성 자 : 엄셋별, 장규권,
고성미 의원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
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,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
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악취실태조사(안 제3조 및 제5조)
-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(안 제6조)
- 지원사업 추진상황 파악을 위한 관리·감독 사항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악취방지법」 제3조
-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- 기 타

1) 입법예고: 2023. 11. 16. ~ 2023. 11. 22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악취”란 「악취방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.
2. “생활악취”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.
3. “사업자”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자의 책무)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악취실태조사)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

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·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사업 등)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
2.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
3.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
4.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집행에 대한 관리 등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지도·감독)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악취방지법

[시행 2023. 9. 29.] [법률 제19310호, 2023. 3. 28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 7. 16.>

1. “악취”란 황화수소, 메르캅탄류, 아민류,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.
2. “지정악취물질”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악취배출시설”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, 기계, 기구,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복합악취”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.
5. “신고대상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
 - 나.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

[전문개정 2010. 2. 4.]

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며,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·연구,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·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, 동물의 사육,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

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
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-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·
시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2. 4.]